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3. 1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2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가. 제정이유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호대상자(안 제2조)
 -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한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 보호내용(안 제3조)
 - 보상품 지원
 - 연탄운반비 지원
 -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 보호수준의 결정 : 규칙으로 정함(안 제34조 제2항)
- 보호대상자의 결정(안 제4조)
 -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 조례안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 보훈자와 장애인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조부터 제5조까지 5개조로 새로 제정하는 안으로 매년 예산심의시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 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므로 각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저소득자 생활안정지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8 |
|----------|----|

제출년월일 : 1999. 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호대상자(안 제2조)

-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한 자
- (2)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3)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나. 보호내용(안 제3조)

- (1) 보상품 지원
- (2) 연탄운반비 지원
-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다. 보호수준의 결정(안 제4조)

- (1)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활보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조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한 자

- 2.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3.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보호내용)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보상품 지원
- 2. 연탄운반비 지원
-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중 연탄사용 가구로 한다.

③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3. 1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2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가. 제정이유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제한시간·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어 동조례를 제정, 청소년 보호사무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